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954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박은경, 박태순, 한명훈, 박은정, 유재수, 선현우, 설호영, 최찬규, 김유숙, 현옥순 의원(10인)

1. 제정이유

○ 안산시,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,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○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○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
○ 지원 등 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○ 비용추계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,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 및 직업계고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현장실무교육과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산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”이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실무교육 및 지역사회 취업·정착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, 직업계고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직업계고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.
   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
   나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
   다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
3. “유관기관”이란 정부 및 안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산업 및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참여학교”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를 말한다.

5. “참여학생”이란 참여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말한다.

6. “참여기업”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.

7. “참여대학”이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대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사회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

2.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

5.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및 참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

2. 참여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산업체 연계 교육 지원

3. 현장실습 기업 발굴·관리 및 업무협약 체결 지원

4.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

5. 졸업생 성장경로 관리 및 지역 정착 지원

6. 참여학생의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관리 지원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, 참여대학, 참여학교,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,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경 의원 대표발의

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 -954

제안년월일 : 2025. 12. 3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 안 제2조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조문을 순서대로 규정하고,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항은 시-교육지원청 간 공동 수행이 전제된 내용으로 임의규정으로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안 제2조의 목 순서를 조정하고, 안 제4조에서 제7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

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가목,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나목, 다목 및 가목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를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설치·운영한다"를 "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7조 중 "구축한다"를 "구축할 수 있다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(생 략) 2. “직업계고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. 가.·나. (생 략) 다. (생 략) 3.~7.(생 략)	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(제정안과 같음) 2. ---------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----. 나.·다. (제정안 가목 및 나목과 같음) 가. (제정안 다목과 같음) 3.~7.(제정안과 같음)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----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---------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②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② (생 략)	제5조(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-----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(제정안과 같음)

제6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유관기관, 참여대학, 참여학교,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② (생 략)	제6조(지원 등) ① ------- ----------할 수 있다. ② (제정안과 같음)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, 유관기관, 지역대학, 산업체,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	제7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------구축할 수 있다.